

- 쌍용 더 플래티넘 삼계에 청약 당첨되신 것을 진심을 축하드립니다.
- 귀하가 청약하신 내용에 대해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52조(입주대상자격 확인 등)에 의거하여 당첨자에 대한 자격심사를 진행하게 되며, 자격 심사 과정에서 **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셔야 합니다.**
- 소명하지 못할 경우, 규칙 제57조 제 8항에 의거하여 당첨 취소되며,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어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기준으로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**‘수도권 및 투기·청약과열지역 1년, 수도권외 6개월, 위축지역 3개월간 청약이 제한’**되오니 이점 유의하시고, 아래의 제출기한 내 당첨 유형별 자격확인 서류를 제출하여 확인 받으시기 바랍니다.

## I 사전 자격확인 서류검수 일정 및 장소

접수기간	2022년 07월 28일(목) ~ 2022년 08월 03일(수) [7일간 진행] 10:00 ~ 16:00
방문대상	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(예비당첨자 포함)
장 소	당사 견본주택(경상남도 김해시 김해대로 2488, 쌍용 더 플래티넘 삼계 견본주택)
유의사항	모든 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(2022.07.08.)이후 발행분에 한함.

## II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당첨자 제출 서류 ※ 추가서류는 대상에 해당되는 당첨자의 경우에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

구분	해당서류	발급구분	추가서류 제출 대상 및 유의사항
필수 서류	인감증명서, 인감도장	본인	- 용도 : 주택공급 신청용(본인 발행분) /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대체 가능 ※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시 제3자 대리신청 불가
	신분증	본인	-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, 여권 /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,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증
	주민등록표등본[상세]	본인	- 주민등록번호(세대원포함), 주소변동사항, 변동사유,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포함하여 발급 ※주민번호 뒷자리 표기 발급
	주민등록표초본[상세]	본인	- 인적사항 변경 내용, 주소변동 사항, 세대주 성명/관계 등을 “전체 포함”으로 발급 ※주민번호 뒷자리 표기 발급
	가족관계증명서[상세]	본인	- 성명, 주민등록번호(세대원 포함) 뒷자리 표기 발급
	혼인관계증명서[상세]	본인	- 주민등록표상 당첨자가 미혼이거나, 배우자가 사망 혹은 이혼한 경우
	출입국사실증명원	본인	- 당첨자의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지정하여 발급
다자녀 배점 기준표	본인	- 견본주택 비치	
추가 서류	혼인관계증명서[상세]	본인 및 자녀	- 만 19세 이전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- 만 18세 이상인 자녀를 “미혼인 자녀”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
	주민등록표등본[상세]	배우자	- 주민등록상 배우자 분리된 경우
	주민등록표초본[상세]	직계존속	- 직계존·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 받고자 하는 경우 ※ 3년 이상 부양한 피부양 직계존속(3년이상 계속 거주)
	가족관계증명서[상세]	배우자	-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배우자 전혼자녀가 본인 주민등록표등본상에 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
	한부모가족증명서	본인	- 한부모 가족으로 세대구성 배점(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자)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
	복무확인서	본인	-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자격으로 신청한 경우
	임신진단서 또는 출산증명서	본인(또는 배우자)	- 임신한 태아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※ 임신증명서류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함
	입양관계증명서	본인(또는 배우자)	-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
	출산이행 확인각서	본인	- 견본주택 비치 임신중인 경우
	출입국사실증명원	세대원	-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(단신부임)
대리인 신청시	위임장	청약당첨자	-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, 견본주택 비치
	인감증명서, 인감도장	청약당첨자	- 용도 : 주택공급 신청용(본인 발행분) ※ 제3자 대리인 신청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대체 불가 - 단,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(서명인증서)이나, 이에 관한 공정증서
	신분증	대리인	-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, 여권 등/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,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증
	인장	대리인	- 대리인의 도장 또는 서명 가능

※ 상기 모든 제출하는 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(2022.07.08.)이후 발행분에 한함.

※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 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.

## 다자녀 특별공급 배점 기준표 - 「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운용지침」 [별표1]

평점요소	총 배 점	배점기준		비 고
		기준	점수	
① 미성년 자녀수	40	5명 이상	40	• 자녀(임신중에 있는 태아 및 입양아 포함)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만 포함
		4명	35	
		3명	30	
② 영유아 자녀수	15	3명 이상	15	• 영유아(임신중에 있는 태아포함)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6세 미만의 자녀
		2명	10	
		1명	5	
③ 세대구성	5	3세대 이상	5	•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(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, 무주택자로 한정)이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
		한부모가족	5	• 공급신청자가「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자
④ 무주택기간	20	10년 이상	20	• 배우자의 직계존속(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)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,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및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. • 청약자가 성년(만19세 이상,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)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하되 청약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 (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)부터 무주택 기간 산정
		5년 이상 ~ 10년 미만	15	
		1년 이상 5년 미만	10	
⑤ 해당 시도 거주 기간	15	10년 이상	15	• 공급신청자가 해당지역(경상남도)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 ※ 시는 광역시·특별자치시 기준이고, 도는 도·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외의 경우 서울·경기·인천지역 전체를 당해 시·도로 본다
		5년 이상 ~ 10년 미만	10	
		1년 이상 ~ 5년 미만	5	
⑥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	5	10년 이상	5	•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, 입주자 저축의 종류, 금액, 가입자 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
총 배점 (100)				

①, ② :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(이혼·재혼의 경우 자녀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(공급신청자와 동일한(1), (2)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 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도 포함)에 한함)

③ : 한부모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

③, ④ : 주택소유여부판단 시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 53조를 적용

④, ⑤ :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

⑥ : 입주자저축 가입확인서로 확인

※ 동점자 처리기준 : ① 미성년 자녀 수가 많은 분(태아, 입양 자녀 포함) ② 자녀 수가 같을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(연월일 계산)이 많은 분

※ 상기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위 기재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결과 평점요소 자격이 다르거나 무주택기간 상이 및 유주택자 등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당첨취소 및 계약해제는 물론 관련법령에 의거 처벌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

※ 상기 모든 제출하는 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(2022.07.08)이후 발행분에 한함.

※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 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.